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6조의 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

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

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업소를 점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함)를 말한다.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의6(인증절차 및 적용·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인증 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7(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제3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및 제3조의3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등록·지정·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라목 단서 중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정 등 신청

가. 인증신청(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나. 변경 인증 신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 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식품의 2019년 수입량이 10,000톤 이상인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2년 10월 1일
2. 해당 식품의 2019년 수입량이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3년 10월 1일
3. 해당 식품의 2019년 수입량이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인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4년 10월 1일
4. 해당 식품의 2019년 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5년 10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 2026년 10월 1일

제2조(조건부 수입검사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 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 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 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 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 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		

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
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
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
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별지 제1
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
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
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
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
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변경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
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신 설>

설명서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차 및 방법

②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당업소를 점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u>식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조의4(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함)를 말한다.</u>		<u><신 설></u>	<u>제3조의7(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 1. 제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u><신 설></u>	<u>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를 통해 조사·평가할 수 있다.</u>		<u>제5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① ~ ⑧ (생략)</u> <u>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④ (생략)</u>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u>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u> <u><삭 제></u> <u>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u> ⑤ ----- ----- ----- ----- ----- ----- ----- ----- ----- -----.
<u><신 설></u>	<u>제3조의6(인증절차 및 적용·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인증 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2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	2. ----- ----- 수입식품등(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다)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제50조(수수료) 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지정·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0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제3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및 제3조의3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4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등록·지정·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외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7제2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분 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조의2 제5항 제3호	인증 취소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라.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재료·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
바.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 취소
사.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취소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의2제5항제1호	시정명령
		인증취소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6조의2제5항제2호	인증취소
4. 제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	시정명령
5. 법 제5조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	인증취소
6. 위의 제1호마목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2제5항	인증취소
7. 제1호아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의2제5항	인증취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Extension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the required documents. Applicants do not fill in the darker blanks of this form.

접수번호 Registration number	접수일Date of application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인증: 120일 For certification:120 days 연장: 120일 For extension: 120 days
신청인 Applicant	해외제조업소명 Name of establishment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자우편주소 E-mail address
	소재지(공장) Address of Establishment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신청 내용 Content	HACCP팀장 Person responsible for HACCP		
	HACCP적용 식품명(유형) Food items(type) subject to HACCP plan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certification/extension of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3)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2(1) and 3-3(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Appl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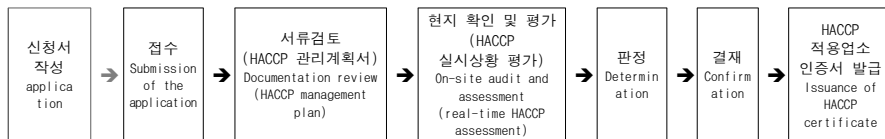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인증기관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s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A HACCP plan(a voluntary plan explaining critical limit, monitoring method, corrective measure and HACCP verification) for each type of food subject to HACCP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수수료 Fee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certification for HACCP-applied Establishment (submit only when extend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Fee which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certification institute according to Article 4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5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처리절차 Procedure

신청인
Applicant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Agency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6)
(A responsible division in certifying HACCP applied establishment)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 인증번호 Certificate No. :
- 대표자 Representative:
- 업소명 Name of Est.:
- 소재지 Address:
-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
- 식품종별 Scope of Subject Items:
- 중요관리점 CCP:
- 유효기간 Valid Date : YY/MM/DD ~ YY/MM/DD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제5항 및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s designated as the HACCP-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1), (2), (3)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3-3(3), (5), and 3-4(3)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월 Month / 일 Day / 년 Year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 Service

Seal of Consignment organization

< 의안 소관 부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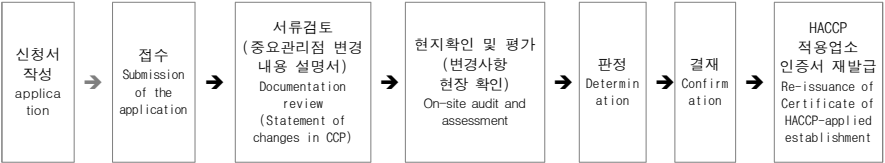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2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		수수료 Fe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장이 정하는 수수료 Fee which is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certification institute according to Article 4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50-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2.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1부 A copy of statement of changes in CCP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A document to confirm the changes	

유의사항 Note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인증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In case of a lost certificate, please fill in the Reason for Loss and do not need to attach a copy of certificate.

처리절차 Procedure



신청인
Applicant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
(HACCP 적용업소 인증 담당부서)
Agency entru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2(6)
(A responsible division in certifying HACCP-applied establishment)